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사무처 직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 지원을 추가〉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41호)

2025. 2.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경태 · 정준호 · 박지원 · 서영교 · 이건태 · 전현희
이성윤 · 김용민 · 박균택 · 조계원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3.

3. 회 부 일 : 2024. 10. 24.

※ 의안번호 : 484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비록 해당 법령은 국회의원에게 별도의 조사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 공익신고의 내용이 국정과 관련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국정조사 내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어떠한 공익신고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어떤 국회의원도 자신의 공익신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해줄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국회사무처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의 경우 곧장 국가권익위원회

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관련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특정 상임위원 자격이나 경력 그 외 보좌진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직무)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u>
7. ~ 11. (생략)	8. ~ 12. (현행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공익침해행위¹⁾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예시: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495개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²⁾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조사·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공익신고기관으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공익신고기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조사기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상기 법령에 따르면, 모든 공익신고기관은 법률에 의한 정당한 공익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이 공익신고를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익신고자가 어느 공익신고 기관을 선택하여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조사·수사의 착수,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보상·포상 및 구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의 보호·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2020.10., p.25.).

접수⁴⁾한 경우에는 신고내용과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으로 이송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이송하였는지를 통지하여야 함.

개정안은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 지원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가 신고하려는 사항의 처리에 가장 효과적인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경력과 보좌직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국회의원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익신고자의 편의와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공익신고 접수 지원기구가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공익신고의 접수·처리에 적합한 국회의원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연락처,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 일정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나, 관련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⁵⁾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공

4)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업무범위 내에서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한 것은 국회의원이 접수·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 2020.10., p.26.).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익신고의 실체적인 내용에 해당함.

국회사무처는 국회 소속 직원 또는 국회사무처에 의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만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법 제6조제1호)”로서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자의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공익신고 정보를 국회사무처가 제공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표-2] 공익신고기관에 따른 구분

구 분	국회의원	대표자 또는 사용자 (예시: 국회사무처)
공익침해행위를 한 신고 대상자	소속 무관	국회 소속 직원 또는 국회사무처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1호

둘째, 공익신고 접수 지원기구가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익신고 내용에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을 판단·안내하는 과정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와 공익신고자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종합하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편의 제고, 국회의원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기대효과와 공익신고기관별 공익신고 접수권한에 대한 법률의 규정 취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및 공익신고자의 자

울성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
